

##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비 고
1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계 및 예산편성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결과 12,174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음. 이는 당해연도의 세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체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됨으로써 익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li> <li>○ 세목별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하였음. 이는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 최근 수년간의 세입증가 규모는 물론 부동산 및 경제동향 관련 데이터의 추계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로 보임.</li> <li>○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 방법을 개선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이 과소 또는 과대 편성되어 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바라며 또한, 올바른 추계방법에 따라 편성하였다 하더라도 세입의 증가 및 감소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하기 바라며 확보된 세원이 예산편성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예산 편성관련 세수추계시 기초자료 및 공통변수를 토대로 산출한 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특수여건을 반영하여 본예산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음.</li> <li>○ 또한, 연도 중 특수여건 발생으로 인한 증감이 있을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음.</li> </ul>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비 고
2	기타특별회계 운영 존치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운영 중인 기타특별회계 중 일부 회계의 경우 세입세출 규모가 작고 신규사업이 거의 없으며 재원도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존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li> <li>○ 예를 들면,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17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 총액은 315,671,802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551,000원에 불과함.</li> <li>○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제반 운영사항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과 함께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시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하여 6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상황을 검토한 결과</li> <li>○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인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 등의 연간 세입이 8억원 내외로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019회계연도부터 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임.</li> <li>○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현재 융자금회수 마무리단계이며 국민주택 관련 소송에 따른 건물철거를 진행해야 하므로 건물철거 후 폐지할 계획임. (2019년 말)</li> </ul>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비 고
3	지방세 체납액 관리 및 일소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p>○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체납액 규모는 크게 줄지 않고 있어 현행 조직이나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 개선을 통해 체납액을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보임.</p> <p>○ 일정액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1차 독촉장 발부 시기부터 예의 주시하여 체납 시 즉시 압류 조치하여 채권의 후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재산압류, 공매, 경매 방법 이외에도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p> <p>○ 특히, 소액 체납건수가 3만 건을 웃돌고 있어 현재의 조직 시스템으로는 1년에 4회에 걸쳐 보내는 독촉장 이외에는 별다른 징수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보다 다양한 체납액 관리 및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인력보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권고함.</p>	<p>○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위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액체납의 경우에도 금액 상관 없이 3회 이상 체납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li> <li>-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 활동 실시</li> <li>- 상습체납자의 경우 징수책임자 지정 지속적인 관리 실시</li> <li>- 체납자 현지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및 소액 현장징수 활동 실시</li> </ul> <p>○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체납액 징수 현장기동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음.</p>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비 고
4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반영 소홀	<p>○ 당해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에서 국·도비 등 반납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반영해 함이 마땅함에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제외한 5개의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액이 불일치하게 반영하거나 세입자체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예산의 규모가 왜곡되고 예산반영 없는 자금이 세입으로 유입됨으로써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p> <p>○ 향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시에는 전년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기 바라며 가결산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리토록 하여 세입예산이 과소 또는 과대 반영되어 일이 없도록 하시고 직원 자체 교육을 강화하여 결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시기 바람</p>	<p>○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반영은 가결산 금액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으며, 결산 승인 후 변동분을 확인하여 다음추경에 반영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p> <p>○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이 과소 또는 과대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전년도 결산서를 바탕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가결산으로 반영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변경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음</p>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관련부서
5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변경사항 예산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도비 등 보조사업의 예산편성은 보조내시 및 보조금 확정통지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고 보조금액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2017년도 예산 회계년도의 보조금 변동사항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음.</li> <li>○ 이는 허수의 예산이 반영되어 예산을 왜곡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착금된 보조금을 초과하는 예산 집행이 이뤄질 개연성이 있음.</li> <li>○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착금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착금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보조금이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허수의 예산이 존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특히 착금된 자금보다 초과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도비 보조금 최종 확정 통지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착금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예산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li> </ul>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비 고
6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집행잔액은 15,114백만원이며 전년도에는 12,7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1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00% 미집행 사업은 32건에 9억원 50%이상 잔액 발생사업도 39건에 28억원에 달함.</li> <li>○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 편성, 적기에 예산집행의 태만, 추경 시 소극적인 감액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을 제외한 기타의 집행 잔액은 필요한 예산집행의 방해와 효율성을 저해함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정교한 예측기법 개발,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예산 배정기관 등에 대한 설득력 강화 등을 통한 계획변경 및 취소를 최소화하여 계획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li>○ 또한,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도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받아 거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비효율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며 국비교부에 있어 군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되었다면 국비 예산 책정시에 관련 군비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시에는 반드시 계획수립단계, 국도비 신청단계, 예산확정 집행단계 (예산배정·재배정 포함) 별로 사전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결산결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은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삭감 또는 배제하여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li> <li>○ 또한, 당해연도 집행잔액 과다 발생 예상사업은 정리추경을 통하여 감편성 하는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노력하겠음.</li> </ul>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비 고
7	예산집행액 감소에 따른 후속 조치 미 이행	<p>○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평창군 농촌지역 특성상 사업의 축소 및 포기가 예상됨에도 관행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국.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과 추진으로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결산시점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예산운영의 어려움과 자금을 사장하였고 일부 읍면에서는 최종 추경예산시 감액 요청하였음에도 반영하지 않았음.</p> <p>○ 미 집행이유가 발생한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이월조치 등 최종 추경예산시 정리를 통하여 계상된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탈피하여 전년도 집행내역 등을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검토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발생한 재원을 다른 목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실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됨.</p>	<p>○ 각종 보조사업 등 모든 예산 편성시에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p>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비 고
8	이월예산 과다 발생	<p>○ 지방재정법 제50조(예산의이월) 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7회계연도 이월예산은 255건에 1,024억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p> <p>○ 이는 사업규모의 대형화, 사업계획변경, 공기부족,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예산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별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p>	<p>○ 향후, 예산편성시 사업시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내 사업비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겠으며,</p> <p>○ 과다 이월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 등은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사업비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p>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비 고
9	예산집행잔액 반납처리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회계법 제7조제1항 “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고” 지방회계법 제7조제2항 ” 일상경비는 다음회계연도 1.20일 까지 반납할 수 있다 “ 라고 정하고 있음.</li> <li>○ 자치행정과 일상경비 집행잔액 450,000원은 반납기한 1.20보다 4일, 보건의료원 반납금 37,700원은 53일이 경과된 후 지출잔액을 반납하였음.</li> <li>○ 일상경비 지출잔액 또는 반납금이 발생할 경우 출납폐쇄 후 반납기한 1.20일 까지 반납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고 잔액에 대하여 출납폐쇄 이후 반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세출일계 확인 및 집행내역 반납금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li> </ul>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비 고
10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조치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추진시 사업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162,580,78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음.</li> <li>○ 이월된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집행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잔액 발생 예상시 추경예산을 통해 정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li> </ul>	

번호	제 목	지적사항 및 의견	처 리 계 획	비 고
11	공유재산과 재무제표 상 자산액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 결산서 첨부서류인 공유재산 보고서의 토지재산 현재액과 재무제표상 토지자산액이 불일치하고 입목재산의 경우 공유재산보고서에는 증가액이 없으나 재무제표에는 증가액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재무제표 관리 부서간 상호 자료입력 대조 등 상호 연계 체제가 미흡함</li> <li>○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회계부서의 복식부기담당의 지방재정관리 시스템(e호조)과 공유재산부서 재산관리담당의 새올(공유재산)행정 시스템간 향후, 토지, 건물 등 자산취득, 매각시 일치된 금액입력과 매년 자산의 감가상각 반영으로 평창군의 자산 총계가 상호 일치되도록 조치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취득재산 승인 시 공유재산 자산취득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산총계가 상호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음.</li> </ul>	